

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실상 폐업한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예정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전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별표 4 중 “(제14조 관련)”을 “(제1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u>행정처분의 기준</u>) (생략) <u><신설></u>	제14조(<u>행정처분의 기준 등</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등록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예정 사실을 해당 기상사업자에게 사 전 통지하고, 기상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